

의안번호	2204601
의 퇴 인	이종욱의원
회 답 일	2024. 11. 5.
추 계 번호	24B407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 재정수입 변화는 2025년 63억 9,700만원, 2029년 66억 3,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25억 8,600만원(연평균 65억 1,7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국고 수입감소):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법 제31조(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부터 법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까지 삭제	-6,397	-6,456	-6,517	-6,578	-6,639	-32,586	-6,517

주: 동 재정수입변화는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감소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법 제31조(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부터 법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까지 삭제	• (수입감소) 현행법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용도 등 삭제 ※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것임.¹⁾ 수질개선부담금 수입 중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귀속분(40%)은 폐지 예정으로 국고 수입감소가 예상됨	의무규정

1)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법 제31조(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부터 법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까지 삭제	○	• (수입감소) 수질개선부담금 수입 중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귀속분 감소액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수입감소액을 추계함
 - 개정안은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부담금으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은 근거 법령만 「지하수법」으로 변경되고, 현행과 변동이 없으므로 수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수질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삭제: 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부터 법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까지 삭제

- 환경부는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중

-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 (부과대상)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 (부과단가) 취수량 또는 수입량(m^3) $\times$ 2,200원/ m^3
- (운용체계) 환경부(위임) $\rightarrow$ 시·도지사(부과) $\rightarrow$ 영업자(납부) $\rightarrow$ 시·도지사(징수) $\rightarrow$ 환경부(세입) $\rightarrow$ 세입 징수비용 교부* 및 환특 사업비(세출)
* 시·도 징수비용 20% +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 40%
- (징수실적)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98억원 부과, 154억원 징수

[표 2] 수질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합계	12,067	700,347	9,381	438,608	62.6
2023	522	19,848	319	15,351	77.3
2022	518	20,838	350	15,672	75.2
2021	589	20,053	348	14,819	73.9
2020	519	19,768	323	14,451	73.1
2019	606	20,572	344	14,791	71.9
2018	510	21,375	329	15,035	70.3
2017	548	21,553	330	15,257	70.8
2016	592	22,125	349	14,269	64.5
2015	428	20,890	331	13,023	62.3
2014이전	7,235	513,325	6,358	305,940	58.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배분) 현행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징수금액 기준으로 각각 국가 40%, 시·도 20%, 시·군·구 40%로 배분되어 귀속되고 있음
 - 2019~2023년간 총 평균 징수액은 150억 1,700만원
 - 귀속주체별로 2019~2023년간 연평균 국가 60억원(40%), 시·도 30억원(20%), 시·군·구 60억원(40%)으로 배분됨

[표 3] 수질개선부담금 총 징수액 및 귀속주체별 배분액: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귀속주체	수입 회계	배분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총 징수액		100%	14,791	14,451	14,819	15,672	15,351	15,017
-국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40%	5,916	5,780	5,928	6,269	6,140	6,007
-지자체(시·도)	일반회계 등	20%	2,958	2,890	2,964	3,134	3,070	3,003
-지자체(시·군·구)	일반회계 등	40%	5,916	5,780	5,928	6,269	6,140	6,007

주: 수질개선부담금은 보고서 총 징수금액 기준으로 국가, 시·도, 시·군·구에 대해 4:2:4 산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부담금으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²⁾에서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분(40%) 폐지 등 정비방안 발표
 -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단가 2,200원/㎥ 중 국고 귀속분 40%를 감면하여 1,320원/㎥으로 조정하고,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계획

[표 4]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②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95년~)

* '19년 징수 148억원, '22년 징수 157억원, '24년 계획 158억원

- (현황)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먹는물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등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샘물등의 취수량·수입량(㎥) × 부과요율(2,200원/㎥)

-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지자체 수입분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부담금 수입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분(40%)은 폐지하고, 지자체 교부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개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3.27., 21쪽

2)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3.27.

□ 본 추계는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수입감소액을 추계함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총 수질개선부담금은 2024년 예산 기준 158억 4,400만원에 매년 0.9%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 0.9% 적용

[표 5]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귀속주체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총 징수액	14,791	14,451	14,819	15,672	15,351	0.9%
－ 국가 귀속(40%)	5,916	5,780	5,928	6,269	6,140	0.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추계결과, 현행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 재정수입 변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25억 8,6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6]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변화(국고 수입감소):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 (환경개선특별회계)	-6,397	-6,456	-6,517	-6,578	-6,639	-32,586

주: 동 재정수입변화는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감소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표

(환경부 제출자료)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기관	시·도지사	시·군·구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 개선에 이바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부과대상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50톤/일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100톤/일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산정기준	취수량 또는 수입량(㎥) × 2,200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사용용도	1.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 지원 2.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지원 3.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의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1.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5.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

구분	수질개선후담금	지하수이용후담금
	-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실태 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	
증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부과제외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 등	규정 없음
감면대상	규정 없음	1.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3호 및 제4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분	수질개선후담금	지하수이용후담금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 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감면기준	규정 없음	1 고려사항 -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 지하수이용후담금 부담 능력 2. 감면기준 : 시·군·구의 조례로 결정
부과시기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신고) 시
납부기한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납부기한 연장	유예 한 달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분할납부	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